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법률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법률 근거이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법률 근거

구분	직업, 업무	처벌 기준
1. 성희롱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문자상담 포함) ① 성적인 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질문 (성적 단어 검색요구 등)을 하는 경우 ② 친근감을 표시하며 사적인 만남을 유도하거나 연락처를 요구하는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폭행, 폭언 (욕설·협박·모욕)	- 폭행, 상해 또는 욕설, 협박,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① 폭행/상해를 가하는 행위 ② 폭언(욕설, 협박, 모욕)을 하는 경우	- 형법 제257조(상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형법 제311조(모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3. 공포심·불안감 유발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허위 불만 제기 등 업무방해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5. 장난전화 등	- 업무와 무관한 장난전화를 하는 경우 (문자상담 포함) 또는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제2조 (범칙금의 납부 통고 등): ① 장난전화: 8만원 ② 업무방해: 16만원

존중하고
존중받는
상호 존중문화로

괴롭힘 없는 직장

함께
만들어주세요

저 사람이 원래...
신입 직원은 원래...
저희 회사는 원래...

원래
그렇다는 말로,
직장 내 괴롭힘을
정당화할 순
없습니다



우리가족요양원은

모든 사람의 인권과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족요양원 폭언·폭행·성희롱 예방수칙



폭언 예방하기

부드럽고 긍정적인 언어로
대화하여 항상 따뜻한 말로
대화합니다.



폭행 예방하기

모든 폭력적인 행동은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성희롱 예방하기

외모나 성적적인 발언을 피하고,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서로의 인권을 보호해 주세요.



폭언·폭행·성희롱 등 위법행위가 발생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